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4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김 건
김용태 · 조은희 · 신성범
백종헌 · 정성국 · 최보운
강명구 · 이인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관할 소방관서장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소방대상물의 증·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및”을 “,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등”을 “및 구조 변경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생 략)</p> <p>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p> <p>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p> <p>2. ~ 4.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p> <p>① ----- ----- ----- -----.</p> <p>1. ----- -----<u>및 구조 변경 등</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